

건설제도 알리미 2016. 11

CAK 대한건설협회

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
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



1 지방계약 예규(입찰및계약집행기준, 낙찰자결정기준) 개정 · 시행 ('16.11.23)

- 기술제안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구체화
 - 채공고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설계서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, 입찰자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수의계약 체결
 - 가격의 적정성은 거래실례가격,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, 표준시장단가, 감정가격,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입찰참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최종 결정
-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
 - (현행) 공동수급체 구성 : 5인 이내, 1천억원 이상 공사 : 10인 이내
 - (개정) 공동수급체 구성 : 5인 이내, 5백억원 이상 공사 : 10인 이내
- 혼합방식 공동도급에서의 중복참여 제한규정 개선
 - (현행)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, 일괄·대안공사,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→ (개정) 기술제안입찰 추가
-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주체 개선
 - (현행) 시설공사 손해보험 주체 건설사 → (개정)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 ※ 국가계약법과 일치

- 공사 입찰시 교부받은 설계서 무단사용 금지 명문화
 -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, 배포, 개작, 전송 등의 사용·수익 금지

- 사고이월 등의 경우 선금반환 폐지
 - (현행) 사고이월 등의 경우 선금잔액 반환 후 이월연도에 재지급 → (개정) 사고이월 등의 경우 선금반환청구규정 삭제 및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신설

-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기준 개선
 - (현행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→ (개정) “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” 기준
 ※ 국가계약법과 일치

- 신규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
 -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·도의 관할구역 내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지역업체로 인정

-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한 연장
 - (현행) 신청서 접수 처리기한 10일 이내 → (개정) 14일 이내

2 지방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·시행('16.11.30/'16.11.29)

- 공사 지연배상금률 감경(시행규칙 제75조)
 - (현행) 1,000분의 1 → (개정) 1,000분의 0.5

- **실적제한 기준 하향조정** (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가목)
 - (현행) 1배 이내(50억 미만 0.7배 이내)
 - (개정) 1/3이내, 단 계약 특성에 따라 1/3~1배 범위에서 조정 가능

- **분담이행방식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**(시행령 제90조제3항 신설)
 -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계약지연 야기한 구성원이 지연배상금 납부
 - 지연책임 있는 구성원의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연배상금 계산

- **기술형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**(시행령 제96조제1항·제3항·제4항, 제98조의2제1항·제2항, 제128조제1항, 제131조제1항·제2항)
 -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(낙찰자) 결정방법 심의

- **입찰공고시 명시사항 추가**(시행령 제36조제19호)
 - 입찰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